자궁근종:Surgical myomectomy(DRG)

- ☆ D250 자궁의 점막하 평활근종(Submucous leiomyoma of uterus) ₩ D251 자궁의 벽내 평활근종(Intramural leiomy-
- oma of uterus) 차 D252 자궁의 장막하 평활근종(Subserosal leiomyoma of uterus)
- ☆ D259 상세불명의 자궁근종(Leiomyoma of uterus, unspecified)
- ♪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중증
- 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 심각
- 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N04500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
- ♪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 종양제외), 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 수태력보전에 대한가산, 입원일수에 대한 가
 - 산, 야간응급수술에 대한 가산.

- 1.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 여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1호의 질병군별 점수에 다음과 같이 해당 질병군의 야간공휴 소정점수를
- 추가 산정한다. 이 경우 수술 또는 마취를 시작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병변 부위만을 제거 교정하는 수술을 하여 임신출산능력을 보존한 경우 다만, 자궁내막증이 있거나 불임(또는 난임) 등으 로 임신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난소 또는 난관 전절
 - 제술을 실시한 경우는 사례별로 인정 가. 임신출산을 담당하는 장기의 수술을 동시에 실시하여 그 수술결과로 임신출산능력이 보존 된 경우 나. 아래의 경우는 가산점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 (1) 폐경 또는 55세 이상 여성(55세 이상이나
 - 참조하여 인정) (2) 기존에 시행한 수술로 임신출산 능력을 상 실한 경우

폐경이 아닌 경우 관련자료 첨부시 이를

3. 질병군별 점수는 가입자 등의 입원일수에 따라 다 음과 같이 정상군, 하단 및 상단열외군으로 구분하 여 그 총합을 산정한다. 이 경우 고정비율과 평균 입원일수, 정상군 하한 및 상한 입원일수는 제3호 와 같다.

N04501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7,207.89	2,641,760	44,463.43	3,156,90	3,616.1	3 256,750
N04700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심각한 혹은 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18,347.46	1,302,670	21,099.58	1,498,07	7(2,803.6	199,060
N04701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중증의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23,824.93	1,691,570	27,398.68	1,945,31	2,803.6	199,060
N04702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동반		33,714.65	2,393,740	38,771.86	2,752,80	2,803.6	199,060
	코드	분류					점수	금액
자-412		자궁근종절제술 Myomectomy						
		가. 복부접근 Abdominal Approach						
	R4121	(1) 단순 [장막하근종] Subserosal					3,276.73	236,910
	R4122	(2) 복잡 [근층내, 점막하, 인대간, 간질내, 복막하 근종이나, 결절 2개 이상인 다발성자궁근종인 경우에 산정] Complex					3,444.62	249,050
	R4123	나. 질부접근 Vaginal Approach					2,066.70	149,420
자-412-1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Hysteroscopic Removal of Leiomyoma						

점수

금액(원)

가산

32,384.51 2,299,30(39,185.26 2,782,15(3,616.13

금액

야간 공휴

2,279.21

2,589.36

164,790

187,210

금액

256,750

가요?

자궁근종절제술-질부접근(R4123) 의 포괄수가제 포함여부

나. 3cm 이상 [다발성 포함]

가. 3cm 미만

포괄수가제 포함 대상인경우 행위별청구외에 추가로 다른 청구방법이 있나요?

질병군(DRG) 포괄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별도 고시하는 7개 질병군으로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질병군 입원진료는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궁경부의 근종인경우 외래에서 입원없이 시행하는 자궁근종절제술-질부접근(R4123) 이 포괄수가제 포함 대상인

R4125

R4126

분류

N04500

명칭

복강경을 이용한 기타 자궁

수술(악성종양제외),심각한 합병증이나 동반상병 미동반

- 다음-
 - 7개 질병군으로 응급실●수술실 등에서 수술을 받고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관찰 후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 7개 질병군 중 수정체수술(대절개 단안 및 양안, 소절개 단안 및 양안), 기타항문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따라서 자궁근종으로 자궁근종절제술-질부접근(R4123)을 받고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 (외래)는 행위별청구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측 및 양측(복강경 이용 포함)의 수술을 받고 6시간 이상 관찰 후 당일 귀가 또는 이송한 경우